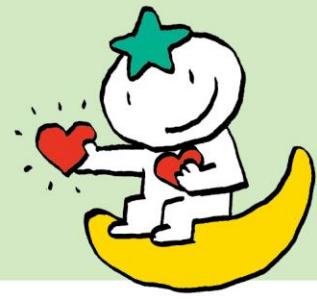


금리는 낮고, 금액은 크게!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신혼부부전세론



(기준일자 : 2021.12.23현재 / 금리:연)

대출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1. 만 19세이상이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세대주)														
	2.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손님														
	3. 아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충족 손님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보유주택 기준]														
① 주택수 1주택 이내 (단,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만 가능) ② 보유주택 가격 9억원 이하 ③ '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 미취득															
대상주택	①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 및 준주택(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② 복합용도(상가·주택 혼합)건물의 경우 신청인의 임차 면적 중 주거 전용면적이 총 임차 면적의 1/2 이상인 경우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및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임차보증금 : 7억원 이내이어야 함 (단, 수도권 외 5억원 이내)														
대출금리	최저 연 3.628% ~ 최고 연 5.448% (최저금리기준 : 2021.12.23 현재, 내부신용(ASS) 1등급, 대출기간 1년, 대출금액 2억원, 일시대, 부수거래 감면금리 적용시)														
	기준금리 (금8채 6개월 변동)	1.588	*가산금리	2.940%	부수거래 감면금리(-)	0.900%									
	(최고금리기준 : 2021.12.23 현재, 내부신용(ASS) 11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1천만원, 일시대, 부수거래 감면금리 미적용시)														
	기준금리 (금8채 6개월 변동)	1.588%	*가산금리	3.860%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 안내>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0.3%	급여이체												
		0.2%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												
		각 0.1%	제휴카드결제, 기타자동이체, 적금상품납입, 하나원큐이체												
	최대감면 조건	부수거래 항목 최대 0.9%													
* 이자신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부수거래감면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대출 실행시 선택한 부수거래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고, 매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 대출일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契약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															
대출기간	2년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단, 연장가능여부는 취급 금융기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에 따름)														
담 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대출금액의 90%)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취급 후 변경불가)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0.7% X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단,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대출비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03 137 679 204">대출금액</th><th data-bbox="679 137 906 204">인지세</th><th colspan="2" data-bbox="906 137 1457 204">인지세 부담</th></tr> <tr> <th data-bbox="303 204 679 271">손님 부담</th><th data-bbox="679 204 906 271">은행 부담</th><th data-bbox="906 204 1108 271"></th><th data-bbox="1108 204 1457 271"></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03 271 679 294">5천만원이하</td><td data-bbox="679 271 906 294">비과세</td><td data-bbox="906 271 1108 294">없음</td><td data-bbox="1108 271 1457 294">없음</td></tr> <tr> <td data-bbox="303 294 679 316">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td data-bbox="679 294 906 316">70,000원</td><td data-bbox="906 294 1108 316">35,000원</td><td data-bbox="1108 294 1457 316">35,000원</td></tr> <tr> <td data-bbox="303 316 679 339">1억원초과</td><td data-bbox="679 316 906 339">150,000원</td><td data-bbox="906 316 1108 339">75,000원</td><td data-bbox="1108 316 1457 339">75,000원</td></tr> </tbody> </table>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	은행 부담			5천만원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초과	150,000원	75,000원	75,000원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	은행 부담																				
5천만원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초과	150,000원	75,000원	7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료(손님 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제출서류	<p>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소득 및 재직 증명서류 등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p>																				
금리인하 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p>※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대출계약 철회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전 최소 10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신용도, 주택보유수, 보유주택가격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금융채 6개월물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저금리는 부수거래 약정을 통해 최대로 감면 받을 경우의 금리 이므로 부수거래 미약정, 미충족시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https://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